

# 북한 형법개정 관련 주요내용

## 1. 개요

- 북한은 지난 4.29 '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'를 통해 형법을 전면개정(종전 8장 161조 → 9장 303조)하였음
  - 분하 형법의 '503 제정' 이후 총 5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'99년 4차개정에 이어 5년만에 이루어진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제1장 '형법의 기본'에서 죄형법정주의를 강화
  - 종전 유추해석 인정조항(구법 제10조)을 삭제하고 "형법에 규정된 행위에만 형사책임" 조항(제6조)을 신설하였음.
- 제2장 '일반규정'에서 형벌의 종류(제27조)를 종전 5종(사형, 노동교화형, 선거권박탈형, 재산몰수형, 자격박탈및정지형)에서 8종으로 확대·세분
  - 노동교화형을 유기와 무기로 분리하고, 노동단련형 신설하였으며, 자격박탈 및 정지형을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으로 분리하였음.
  - ※ 노동단련형(제31조)의 경우 총 245개 범죄사항 중 170개 범죄에 적용
- 제3장 제1절 반국가범죄에 대한 처벌대상을 확대
  - '국가전복음모죄'(제59조) 대상을 '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무장폭동'에서 '반국가목적의 정변·폭동·시위·습격 참가자'로 확대하고

- '조국반역죄'(제62조)는 '공화국 진복 목적의 도망'에서 '다른나라에 도망·투항·변절·비밀을 넘겨준 자'까지 확대하였음.

○ '국방관리 질서를 침해한 범죄'를 별도의 장(제4장)으로 신설

- '국방위원회 결정·명령·지시 집행 태만죄'(제73조), 군사시설 및 군수품 관련 범죄 등을 명시하여 민간인들의 군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근거를 규정하였음.

※ 구법 제6장(일반행정질서 침해범죄)의 군사관련 범죄 6개조항 포함

○ 시장경제적 요소 반영(제5장, 제9장)

- 종전 압거래 처벌규정(구법 제69조)을 비법적 상행위 금지 규정들(제110·111·114·159·160·161조 등)로 세분화하고

- 외국기업의 투자 및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외국인 대상 '탈세죄'(108조)를 신설 하였으며

- '상표권침해죄'(제113조) 신설 등 소유권 개념을 확대하고, 약취·강도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(제301조 등) 하였음.

※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(제5장 제2절)이 종전 18개조문에서 74개조문으로 확대

○ 반사회주의적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및 외부정보 유입차단 관련규정 마련(제6장, 제8장)

- '퇴폐문화 반입·유포죄'(제193조) 및 '퇴폐적인 행위죄'(제194조), '매음죄'(제261조) 등 음란문화와 함께

- '패싸움죄'(제259조), '미신행위죄'(제267·268조), '비법혼인죄'(제270조) 신설 등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고

- '적대방송청취죄'(제195조), '허위날조·유포죄'(제222조) 등 외부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사법제도 관련범죄 처벌강화 및 단순탈북자 처벌 완화(제7장)

- '사건과장날조죄'(제253조)의 경우 종전 2년이하(최고 4년이하) 노동교화형에서 5년이하(최고 10년이상)로, '부당판결·판정죄'(제255조)의 경우 종전 2년이하(최고 4년이하) 노동교화형에서 3년이하(최고 3-8년)로 상향시켰고
- 단순탈북자의 경우 종전 3년이하 노동교화형에서 2년이하 노동단련형(최고 3년이하 노동교화형)으로 하향(제233조) 조치하였음.

### 3. 분석

○ '99년 제4차 개정이후 5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북한 형법개정의 특징은

- '02년 7.1조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경제·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, 개혁·개방에 따른 제도 정비와 주민사회에 나타나는 부정적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
-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시, 노동단련형 도입, 사법기관의 불법행위 처벌강화, 단순 탈북자 처벌 완화 등 인권측면에서 일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
- 경제관리질서 침해범죄와 외화관리 부분의 처벌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점,
- 반국가 범죄 처벌대상 구체화, 사회주의 문화·제도유지 관련 처벌조항을 강화한 점 등임.

○ 이와같이 북한이 형법을 개정한 것은

-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고,
- 7.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변화된 북한 경제·사회의 현실적 수요를 고려하면서
-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, 체제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.